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검역법」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배포해드린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자가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국자의 한국 내 체류 주소(거주지)와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 제한 또는 강제 출국 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한국 내 체류 주소(거주지)나 연락처 변경이 생길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 시 안내 예정)

검역대에서 여권에 해당국가 표식 스티커를 부착 받고, 검사나 격리를 위해 이동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하면, 즉시 시설 운영 관계자에게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21일(최대 잠복기) 이내에 발열이나 두통,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발진, 출혈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증상은 통상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발진,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